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 등을 추가〉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58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고동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18.
3. 회 부 일 : 2025.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까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음주운전자를 법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며,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그 이외의 경우로서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여,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에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포함)과 ②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포함)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리고, 5년간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에서 ① 음주운전 등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목), ②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한 경우(다목) 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안 부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26년 4월 2일로 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

현행	개정안
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9.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현행	개정안
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 ----- ----- -----
가. <u>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u>	가. <u>제45조제1항·제2항</u> ----- ----- ----- ----- ----- ----- ----- ----- -----
나. <u>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u>	나. <u>제45조제1항</u> ----- ----- ----- ----- ----- ----- ----- ----- -----
다. <u>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u>	<삭 제>

현행	개정안
<u>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u> <u>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u> 4. ~ 10. (생략) ③ (생략)	<u><삭제></u> 4.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5,950건으로 1,161명의 사망자와 122,566명의 부상자가 발생함.¹⁾

1) 한국도로교통공단 2024. 12. 23. 보도자료, “음주운전 교통사고, 하루에 42건씩 발생한다.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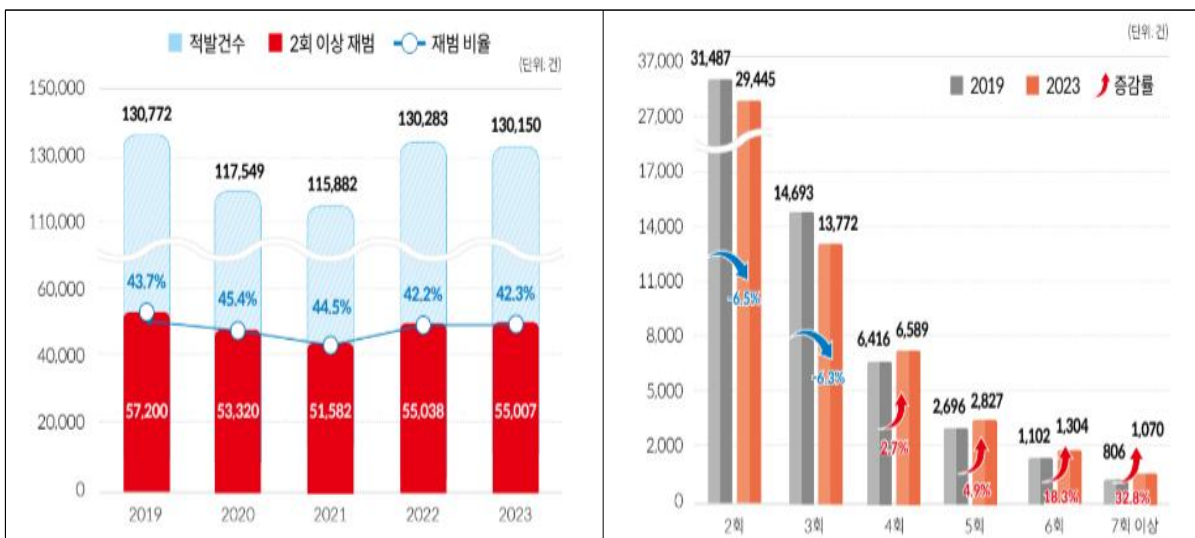
[음주운전 사고 현황]

구 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9년	15,708	295	25,961
2020년	17,247	287	28,063
2021년	14,894	206	23,653
2022년	15,059	214	24,261
2023년	13,042	159	20,628
합 계	75,950	1,161	122,566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청의 음주단속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재범률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2023년의 경우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 130,150건 중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55,007건으로 42.3%를 차지함. 2023년 누적 7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건수도 1,070건에 달했음.²⁾

[음주운전 단속현황 및 재범률]



(자료: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국회도서관, “데이터로보는 음주운전”, Data&Law 2024-6호, 2024. 7. 1.에서 재인용

교통사고 가장 많아”

2) 국회도서관, “데이터로보는 음주운전” 3면, Data&Law 2024-6호, 2024. 7. 1.

또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29.2%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70.8%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³⁾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일으킨 사람과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추가시킴으로써 또 다른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음주운전 결격사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중상해는 「형법」 제258조4)에서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한 자로 정하고 있지만, 운전면허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 제82조제2항제3호 가목·나목·다목·라목은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 제8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신설된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함임.

다만, 개정안 제82조제2항제3호 가목·다목에 따른 삭제 대상에는 사상(사망과 부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정안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3) 국회도서관, “데이터로보는 음주운전” 3면, Data&Law 2024-6호, 2024. 7. 1.

4)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되는 결격사유는 사망과 중상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상해에 미치지 않는 부상의 경우(가목의 예시: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람에게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를 입힌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5)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에 따라서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개정안의 취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임.

그리고, 개정안 부칙은 개정법률이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82조제1항제8호·제9호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 해당 사람들 중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의 경우에는 교통권이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

5)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 ⑥ (생략)

하여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운전면허 취득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그리고 경찰청은 2024년 10월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중이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기계·여객자동차(택시·버스)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로 미국·호주 등에서는 법원의 명령으로 운전면허 영구 결격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결격기간은 대부분 5년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